

의안번호	2217422
의 퇴 인	이연희의원
회 답 일	2026.4.8.
추 계 번호	26B14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억 500만원(연평균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4조)	305	-	-	-	-	305	61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개정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¹⁾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3억 5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5. ~ 2026.6.	30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국내외 순환경제 여건 변화 조사·분석 및 전망 ·순환경제 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지침안 마련 ·순환경제기본계획 마련 정책협의회(포럼) 구성·운영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27~’36)」(안) 마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실시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수립주기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사례를 준용하여 10년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억 500만원(연평균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4조)	305	-	-	-	-	305	61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